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535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정호산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최광휴, 최다은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6. 25.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8가단25790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5. 19. 접수 제309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D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D에게 4년 동안 약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이 추가로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구하여 추가대여 대신 이 사건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7,000만 원은 피고의 대여금 채권 원리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추후 대출 받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2016. 9. 1.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D에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가 D의 유일한 재산인지 여부 등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피고가 D의 아들 H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10만원 ~ 320만 원의 소액이고 약 33회에 걸쳐서 이루어져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D이 위 H 명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과거 아이들 과외를 가르쳤다는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D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할 능력이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D은 사해행위를 한 당사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에게 4년 동안 약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빌려준 돈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어려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당심 증인 D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장성훈, 판사 최수진

별지

부동산 목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G 대 388㎡. 끝.